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0월 12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### □ 제안이유

- 시민편의 시설확충, 국가이양사무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조정, 시민편익의 서비스 행정을 구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시민편의 시설로 확충된 식물원 및 책마루 도서관의 운영, 뉴타운개발 사업 등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 및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·구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함. (안 별표)

-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 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정 원	2,100	2,070	837	102	44	687	400	30
조 정	2,100	2,070	842	102	46	680	400	30
증·감	·	·	+5	·	+2	△7	·	·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지난 9월 단행한 정기인사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</p>	<p>○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시민 편의시설로 확충된 식물원 및 책마루 도서관 운영, 뉴타운 개발사업 등 불가피한 정원 조정임. 앞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.</p>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2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9. 29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시민편의 시설확충, 국가이양사무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에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조정, 시민편익의 서비스 행정을 구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가. 시민편의 시설로 확충된 식물원 및 책마루 도서관의 운영, 뉴타운개발사업 등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 및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·구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함. (안 별표)

-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 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정 원	2,100	2,070	837	102	44	687	400	30
조 정	2,100	2,070	842	102	46	680	400	30
증·감	·	·	+5	·	+2	△7	·	·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
입 안 자	담당과장	김영의
	담당팀장	하전동
	담 당 자	홍성관(☎320-3195)

“별지”

[별표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구청	동
총 계	2,100	<b>842</b>	30	102	<b>46</b>	<b>680</b>	400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22	<b>624</b>	20	91	<b>34</b>	<b>558</b>	395
2급	1	1					
3급							
4급	14	7	1	3		3	
5급	111	37	2	8	1	26	37
6급	367	<b>154</b>	5	18	<b>9</b>	<b>144</b>	37
7급	563	248	9	28	11	154	113
8급	421	<b>158</b>	3	31	<b>4</b>	<b>161</b>	64
9급	245	19		3	9	70	144
별정직 계	8	8					
5급상당							
6급상당	3	3					
7급상당	5	5					
8급상당		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원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359	199	10	11	12	122	5
기능6급	11	10				1	
기능7급	42	31			2	8	1
기능8급	66	38	3		2	21	2
기능9급	104	53	6	4	6	33	2
기능10급	136	67	1	7	2	59	